



제422회국회(임시회)
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
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광업권 설정허가 시 해당 시·도 동의 및 지역주민 의견
청취 의무화 등〉

■ 이언주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05539호)

2025. 2.
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박희석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3

I. 제안경위

1. 제 안 자 : 이언주의원 등 11인
2. 제안연월일 : 2024. 11. 13.
3. 회부연월일 : 2024. 11. 14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“광업권은 광업의 합리적 개발이나 다른 공익과의 조절을 위하여 이 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”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아파트 등 주거지 및 학교 인근에 광업권을 허가해 줌으로써 광산채굴로 인한 소음, 분진, 지반불안정, 교통사고 위험, 학습권 침해 등 지역주민에게 피해와 안전에 위협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어 집단민원 발생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음.

또한 광업진흥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광업권 허가를 받은 광업권자가 도심 광산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생활권, 학습권 침해, 교통사고 위험, 지반파괴와 불안정 등 공익에는 관심이 없고 채굴한 후 평지로 만들어진 땅을 용도변경 하여 지가상승을 유발하고 택지개발 등을 통해 엄청난 부당이득을 편취하는 등 광산개발 본연의 목적보다는 지가상승을 노린 광산개발 악용사례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음.

특히 채굴계획 인가 과정에서도 채굴인가권자인 광역자치단체장과

개별 인·허가권자인 기초자치단체장의 개발행위 불인가 처분에도 불
인가 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광업권은 광업의 합리적 개
발이나 공익과 거리가 먼 부적절한 행위가 벌어지고 있음. 그러나 지
금까지 광업법은 광업진흥에 주로 주안점을 두고 있다보니 인근 거주
지 국민의 환경권, 생활권 권익보호나 최근 벌어지는 부동산 개발을
노린 악용 사례 방지에 규제가 미비했음.

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권 허가 및 광업권 설정 구역
에서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는 것을 결정할 때 해당 시·도의 동
의를 얻도록 하고 시·도와 협의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드시
청취하여 반영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광업의 합리적 개발이나 다른 공
익과 조절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(안 제15조제8항 신설).

Ⅲ. 검토의견

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광업권 설정허가 및 탐사·채굴 결정 시 해당 시·도의 동의와 지역주민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하고, 광업권 설정의 출원구역이 도심일 경우 노천채굴을 금지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제8항 및 제24조제2항 신설).

[개정안 조문대비표]

현행	개정안
제15조(광업권설정의 출원 등) ① ~ ⑦ (생략) <u><신설></u>	제15조(광업권설정의 출원 등) ① ~ ⑦ (현행과 같음)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권 허가 및 광업권 설정 구역에서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는 것을 결정할 때 해당 시·도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시·도의 처분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으며, 시·도와 협의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여야 한다.
제24조(공익상 이유 등에 따른 불허가) ① (생략) <u><신설></u>	제24조(공익상 이유 등에 따른 불허가) ① (현행과 같음)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권 설정의 출원구역이 도심일 경우 노천채굴은 금지한다.
②·③ (생략)	③·④ (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)

현행법은 광업권의 설정을 받으려는 자는 광업권¹⁾의 종류를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출원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고²⁾, 허가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³⁾.

또한 탐사권자는 탐사권설정의 등록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탐사계획을 신고하고, 탐사계획을 신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탐사실적을 제출⁴⁾하도록 하고 있으며,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탐사실적이 광물의 종류

1) 탐사권과 채굴권을 말함

2) 「광업법」

제15조(광업권설정의 출원 등) ① 광업권의 설정을 받으려는 자는 광업권의 종류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출원하고 그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하는 자는 광업권설정출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제2호의 광상에 관한 설명서는 광업권설정출원서를 제출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있다.

1. 삭제

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광상에 관한 설명서

3.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

③ 동일한 구역에서 두 종류 이상의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고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광물마다 제1항에 따른 출원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같은 광상에 묻혀 있는 두 종류 이상의 광물을 탐사하거나 채굴하고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 서류가 완비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정하거나 보완하게 할 수 있다.

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권설정의 출원을 받은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조사자, 조사 사항, 출석 장소, 조사 일시(日時)를 지정하고 광업출원인 및 이해관계 있는 광업권자에게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. 다만, 조사 일시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조사 예정일을 정하고 실제 조사 일시는 조사자의 지정에 따를 것을 명할 수 있다.

⑦ 제6항에 따라 출석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석명령을 받은 자의 출석 없이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. 이 경우 출석명령에 불응한 자는 현장조사 결과에 동의하는 것으로 본다.

3) 「광업법」

제28조(광업권설정) ① 광업출원인은 광업권설정의 허가통지서를 받으면 허가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세를 내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허가는 효력을 상실한다.

4) 이 경우 탐사실적의 제출은 채굴권 설정의 출원으로 간주함.

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 등 기준에 적합하여 탐사실적을 인정한 때에는 채굴권설정의 허가를 하도록 하고⁵⁾,

채굴권자는 채굴권설정의 등록이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채굴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채굴계획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⁶⁾.

5) 「광업법」

제41조(탐사실적의 인정 및 채굴권설정의 출원 등) ① 탐사권자는 제40조에 따라 탐사계획을 신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탐사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탐사실적의 제출은 채굴권설정의 출원으로 본다.

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탐사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에 탐사실적을 제출할 수 없거나 제출한 탐사실적이 제3항에 따른 인정을 받지 못한 때에는 탐사권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만 3년의 범위에서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연장기간에 제40조에 따른 탐사계획의 신고기간 및 제1항에 따른 탐사실적의 제출기간을 더한 전체 기간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탐사권의 존속기간을 넘을 수 없다.

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탐사실적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광물의 종류별 광체의 규모 및 품위 등 기준에 적합하여 탐사실적을 인정한 때에는 그 탐사실적을 제출한 자에게 채굴권설정의 허가를 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채굴권설정의 등록이 된 때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탐사권의 존속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탐사권자의 탐사권은 소멸한다.

6) 「광업법」

제42조(채굴계획의 인가) ① 채굴권자는 채굴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채굴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. 인가받은 채굴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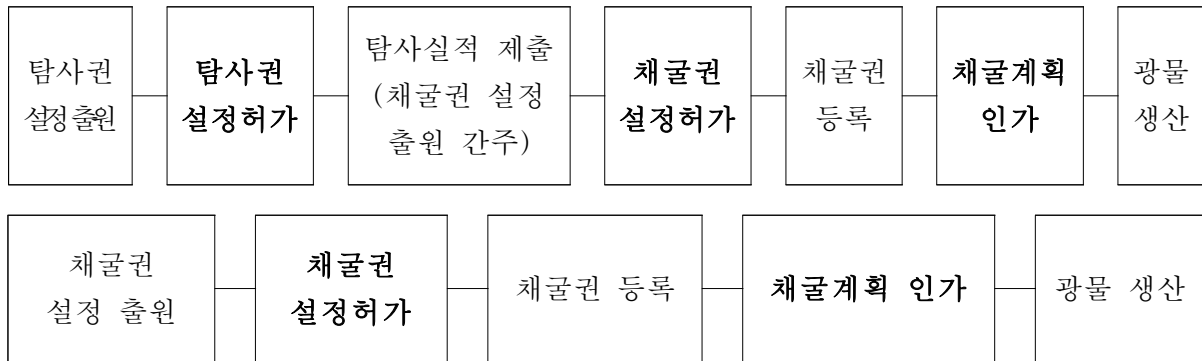
② 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채굴권설정의 등록이 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. 다만, 2011년 1월 28일 이전에 광업권 등록을 한 광업권자 또는 그 이전에 광업권 설정의 출원을 하였으나 2011년 1월 28일 이후에 광업권 등록을 한 광업권자는 광업권 등록일로부터 11년 이내 또는 탐광계획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에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채굴권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기간에 채굴계획의 인가를 신청할 수 없거나 신청한 채굴계획이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채굴권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만 1년의 범위에서 채굴계획 인가의 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④ 채굴권자는 제1항에 따라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광물을 채굴하거나 취득할 수 없다.

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광업의 합리적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굴권자에게 채굴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.

[광물 생산 절차]



개정안은 주거지역 인근에서 광물자원 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반 침하, 분진, 소음, 진동 발생 등 지역주민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광업권 설정허가 및 광물 탐사·채굴 결정 시 해당 시·도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시·도와의 협의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, 지역주민의 환경권 보호 및 광물자원의 개발과 관련한 주민의 수용성 제고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.

다만,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광업권 설정허가 시 해당 시·도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해당 시·도의 처분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과 관련하여,

현행법상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광업권 설정 허가를 받은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채굴계획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,

현행법 제96조⁷⁾ 및 시행령 제71조⁸⁾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채굴계획 인가 권한은 시·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있어 광물의 채굴을 위한 최종 의사결정 권한은 시·도지사에게 있다는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.

문 의 처
02)6788-5464

7) 「광업법」

제96조(권한의 위임)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8) 「광업법 시행령」

제71조(권한의 위임) ①법 제9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권한은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.

1. 법 제42조제1항·제3항 및 제5항(법 제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채굴계획 인가, 변경인가, 채굴계획 인가의 신청 기간 연장 및 채굴계획의 변경명령